

개정세법 해설

2012

■ 머리말

2012년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 생활지원, 조세정의 실천 등 공정사회 구현과 과세기반 확대 등 재정건전성 제고,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을 반영한 조세체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등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둘 째,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를 갖추었습니다.
- 셋 째,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넷 째,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일부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등 공정과세 구현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다섯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등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취지의 올바른 이해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선진일류 국세행정’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국 세 청 장 이 현 동

차례

1. 국세기본법	1
2. 국세징수법	19
3. 조세범처벌절차법	33
4. 소득세법	49
- 종합소득세 분야 / 49	
- 양도소득세 분야 / 65	
- 원천세 분야 / 85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5
6. 종합부동산세법	123
7. 법인세법	135
- 법인세 분야 / 135	
- 국제조세 분야 / 191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3
9. 부가가치세법	225

10. 주세법	279
11. 개별소비세법	291
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15
13. 조세특례제한법	325
- 종합소득세 분야 / 325	
- 양도소득세 분야 / 331	
- 법인세 분야 / 353	
- 원천세 분야 / 411	
- 국제조세 분야 / 423	
- 부가가치세 분야 / 437	
- 개별소비세 분야 / 453	
- 근로장려세제 분야 / 457	
14. 농어촌특별세법	469

국세기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수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호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원재

● 문의사항 : ☎ (02) 397-7544~5

1.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4
2. 친족관계 범위 조정	5
3.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 조정	7
4. 국세-관세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	9
5.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10
6.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11
7.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12
8.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	13
9.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14
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15
1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	16
1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17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18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도 신설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마련
-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절차 진행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하여 납세 의무자의 불복청구권 보장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4호) : 2011. 12. 3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2호) : 2012. 2. 2. 공포

01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수관계인” 정의 ○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시행

02 친족관계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가. 개정취지

-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상법」·「공정거래법」 등)과의 통일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혈족 ○ 부계(父系) 6촌 이내 부계혈족·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 모계(母系) 3촌 이내 모계혈족·그 자녀(4촌)	☐ 6촌 이내 혈족 [부계(父系)·모계(母系) 불문]
☐ 인척 ○ 부계(夫族)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 처족(妻族)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촌 이내 인척 [부족(夫族)·처족(妻族) 불문]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좌 동)

종 전	개 정
☐ 기타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그 배우자·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삭 제> ○ (좌 동) <삭 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시행

03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가. 개정취지

○ 개인과 법인의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이 50% 이상 출자한(영리)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 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i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 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 + (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법정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ii)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i))의 특수관계인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

종 전	개 정
(iii) 특수관계인((i)·(ii))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ii) 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i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i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i) 특수관계인((iv)·(v))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vii)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 회사 및 그 임원	(i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v)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v)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 : 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지배**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비영리법인 :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시행

04 국세 - 관세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도 신설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 1년간 ☐ 후발적 경정청구, 유보소득합산과세에 따른 간주배당금액의 실제배당시 경정청구 : 2개월 <추 가>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 (좌 동) ☐ (좌 동) - 국세 - 관세 간 과세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국조법 §10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국조법 §10의3) : 2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6항)

가. 개정취지

-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② 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 ①과세기간분(과소납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 ②과세기간분(초과납부) : 환급 및 환급 가산금* 가산 *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 ~ 총당일·지급결정일) × 연 3.7%	○ 실제납부일(②)에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단,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6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

가. 개정취지

-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 ①사업장분(과소납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익일 ~ 자진납부일 · 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 ②사업장분(초과납부) : 환급 및 환급 가산금* 가산 * (납부일 · 감면결정일 등 익일 ~ 총당일 · 지급결정일) × 연 3.7%	○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 ① 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 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 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7 교육세 · 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 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 교육세 · 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배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8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가. 개정취지

- 무신고가산세 제도의 단순·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등* × 20% * 원칙 : 산출세액 예외 :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 부당 무신고가산세** : ① + ② **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① 부당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부당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일반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일반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20%	○ (좌 동)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증권 거래세 · 종합부동산세 : 산출세액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납부세액 or 산출세액 · 공제 · 환급세액 ○ 부당 무신고가산세 : 전체 산출세액등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9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기준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 ① + ② ① 부과기준 × (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부과기준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과사유 : 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 부과기준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증권 거래세 · 종합부동산세 : 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 부과사유 : 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산출세액 - 공제 · 환급세액 ○ 부과기준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3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1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등) : Max (① or ②) ① 미납세액의 0.03% / 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 : 미납세액의 5%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 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 1일 - 미납세액의 10%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1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절차 진행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하여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권 보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청구기간 계산의 특례* *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진행시 (국조법 §24①) <추 가>	☐ 특례 추가 ○ (좌 동)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국조법 §10의3) : 조정신청일~결과통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급금액 : 한도 1억원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납부금액의 2~5%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과태료금액</th><th>포상금 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td><td>5%</td></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td></tr> <tr> <td>5억원 초과</td><td>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td></tr> </tbody> </table> *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	과태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과태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수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호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원재

● 문의사항 : ☎ (02) 397-7544~5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 근거 마련	22
2. 위탁 방법	23
3. 위탁대상 체납액 범위	24
4. 위탁 수수료	25
5.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	27
6.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기각 통지 신설	28
7.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29
8.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	30
9. 결손처분 규정 삭제	31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통지기한 설정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5호) : 2011. 12. 3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3호) : 2012. 2. 2. 공포

0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 근거 마련

(국세징수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도피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
-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 (위탁대상 업무)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우편, 전화, 방문 등) ○ (수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 방법·위탁 대상 체납액·위탁 수수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부터 적용

02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 제27조의4 · 제27조의5)

가. 개정취지

-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국세액 징수업무의 위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 절차 ○ 국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내용 등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위탁의뢰서」 송부 ○ 국세청장은 징수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 통지할 의무 ☐ 위탁 해지 ○ 납부, 부과 취소 등으로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 위탁 해지 ☐ 관리 · 감독 ○ 국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부터 적용

03 위탁대상 체납액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

가. 개정취지

- 체납액 정리의 난이도, 국세청 업무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체납액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액체납액에 대해 위탁
 - 국세청장이 체납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 위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대상 체납액 범위 ○ ① 또는 ② 체납액으로 함 ① 체납자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부터 적용

04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가. 개정취지

- (상한선) 위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위탁 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
 - 미국과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25%를 상한선으로 규정
- (수수료율) 현행 세율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징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설정하고, 누진으로 적용
 - 다만, 세금 납부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은 세출이므로 징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

<위탁 사례>

- ① 미국 : 고용창출법상 위탁 징수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결정
 - 실제로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1,500 미만인 경우 24%, \$10,000 초과하는 경우 21%의 수수료를 적용
- ② 자산관리공사 → 신용정보회사 : 위탁 회수금액의 기본 22%의 수수료율을 적용(회수 실적에 따라 16~28%의 수수료율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수수료는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 : 25%)을 곱한 값 *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 수수료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건별 징수금액</th><th>수수료율</th></tr> </thead> <tbody> <tr> <td>1백만원 이하</td><td>징수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td></tr> <tr> <td>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td><td>82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tr> <tr> <td>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532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tr> <tr> <td>5억원 초과</td><td>1,332만원</td></tr> </tbody> </table>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부터 적용

05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

(국세징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가. 개정취지

- 과거 교통시설 등이 낙후되었을 때 징수사무 편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70년대 이후로 사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할 지역의 국세징수 위탁 가능 ☐ 징수비용으로 교부금 지급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6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기각 통지 신설

(국세징수법 제15조제4항, 제5항, 제17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특히, 납부기한 등 만료일의 10일 전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지기한 설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직권)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세자는 납기 3일전*까지 고지 및 징수 유예 신청 가능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기 만료일 <신 설>	<좌 동> <좌 동>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고지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 승인할 경우 징수유예 직권 결정시 통지 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통지하고,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07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2조)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
 - 현재는 지방청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권한 미비로 세무서가 다시 체납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행함 <신 설>	<좌 동> ☐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위해 체납처분 집행권한 부여 ○ 체납발생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 단위로 신설한 「체납처분 특별 전담반」의 대상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8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처분 유예 요건 ○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 - ②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 ①과 ② 중 하나 충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부터 적용

09 결손처분 규정 삭제

(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97. 1. 1. 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가 사라지고,
 - * 납부의무 소멸사유(§26)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된 때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i)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ii) 체납처분 중지 iii)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iv)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등 ☐ 결손처분 취소 ○ i), ii), iv)로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속행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부터 적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4~5

1.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36
2.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37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39
4.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42
5.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44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45
7.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47
8. 기타 개정사항	48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요 개정 내용

-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
- 범칙행위, 범칙사건 및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 조세범칙조사의 관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정을 신설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5호) : 2011. 12. 3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3호) : 2012. 2. 2. 공포

01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가. 개정취지

-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가 없어 발생하는 법 해석·적용상의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 (조세범칙행위) 「조세범처벌법」(§3 ~ §14)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조세범칙사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2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조세범칙조사 실무와 맞도록 관할 규정 수정 및 조문 단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거의 관할 및 인계(§6) ○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인계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	□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함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음 -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종 전	개 정
☐ 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7) ☐ 세무공무원의 심문, 압수, 수색 등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함 -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외에서 심문, 압수, 수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11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기능 ○ 조세범칙조사 집행 관련 중요사항 심의 - ㉠ 「조세범처벌법」 §3(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 일반 조세범칙행위와 달리 조세포탈은 그 해당여부(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유무) 판단 및 포탈세액 산정 등이 복잡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 ㉠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의 결정 * 면세유 부정유통(§4), 주류 불법 제조·유통(§6) 등의 조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처분을 함 - ㉢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 「조세범처벌법」 §18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리 ○ 위원 : ① 위원장, ②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내부위원), ③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민간위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의 제척·회피 -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 * 위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 규정은 두지 않음 □ (위원회 운영) ○ 매 회의는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조세포탈 이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둠 · 조사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18)의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회의는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지정된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가능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가능 ○ 조세범칙처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4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 아래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연간 포탈 혐의금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①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또는 혐의금액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간 신고수입금액</th><th>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상</td><td>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td></tr> <tr> <td>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td><td>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td></tr> <tr> <td>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td><td>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td></tr> <tr> <td>20억원 미만</td><td>5억원 이상</td></tr> </tbody> </table> ※ 다음의 경우로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 「국세기본법」 §2 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29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5 또는 「소득세법」 §168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연 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	100억원 이상	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연 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										
100억원 이상	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종 전	개 정
<신 설>	☐ 신고수입금액 등의 정의 ○ 신고수입금액 :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국세기본법」 §45의3)한 수입금액 ○ 조세포탈 혐의금액 : 「조세범 처벌법」 §3⑥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금액 ○ 조세포탈 예상세액 :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절차 ○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 §3) 관련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 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5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처벌절차법 §9①) 국세청장 등은 범칙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함	☐ 통고처분 양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을 시행령(별표 1)에 입법화하되, ○ 벌금상당액 감면은 「국세기본법」 (§48②)상 가산세 감면(50%, 20%, 10%)과 동일하게 조정 <table><tr><th>수정신고</th><th>기한후 신고</th><th>감면률</th></tr><tr><td>6개월이내</td><td>1개월이내</td><td>50%</td></tr><tr><td>6개월~1년</td><td>1~6개월</td><td>20%</td></tr><tr><td>1~2년</td><td>-</td><td>10%</td></tr></table> ☐ 통고처분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별로 통고서를 작성·통고함 * 조세범칙행위자, 「조세범처벌법」 §18(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 ☐ 통고서 등 문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감면률	6개월이내	1개월이내	50%	6개월~1년	1~6개월	20%	1~2년	-	10%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감면률											
6개월이내	1개월이내	50%											
6개월~1년	1~6개월	20%											
1~2년	-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조문 단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이원적으로 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16)상 포상금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포탈세액의 5~15% (1억원 한도, 시행령 §8 및 훈령) ○ 「국세기본법」(§84의2)상 포상금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단,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수령자 제외) ※ 탈루세액의 2~5% (1억원 한도, 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규정 (§16) 삭제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규정 (§84의2) 단서 삭제 - 조세탈루에는 조세포탈(‘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탈루)이 포함되므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국세기본법」으로 포상금 규정 일원화

종 전	개 정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지급대상 (영 §8①) ○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체납처분면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련 명령사항 위반, 명의대여 ○ 개별 세법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 장부 소각 파기 등	□ 현재 시행 중인 포상금만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삭제>*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과 내용 중복 <삭제>* * 실무상 운영하지 않거나, 발생빈도·포상금액 등으로 보아 실효성이 적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7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제8조)

가. 개정취지

- 압수·수색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압수·수색시 참여자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② 조세범칙행위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③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20의2①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①의 대리인 ④ ①, ②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인(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 ⑤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①~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08 기타 개정사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2항·제11조)

가. 개정취지

- 압수·수색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 구역에서만 할 수 있음	☐ 영치* 규정 삭제 * 압수의 일종이지만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대상으로하는 점, 영장없이 압수하는 점에서 보통의 압수와는 구별됨
☐ '10. 1. 1. 「조세범처벌법」 개정시 과료 규정 삭제	☐ 과료 규정 삭제
☐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기한 : 압수·수색을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	☐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적용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을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남승

◎ 문의사항 : ☎ (02) 397-7552~7555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52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53
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	54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55
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56
6. 신고납부 기한 조정	57
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근거 마련	58
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59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	60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61
11.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62
1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63
1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64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과세 제외
- 비과세되는 어업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하고, 비과세 농가 부업 가축 규모와 소득금액 확대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중간예납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정근거 명시적 규정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 등 규정
- 기타소득 중 위약 또는 해약금에 대한 수입시기 명확화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6호) : 2012.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8호) : 2012. 2. 2. 공포

0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3년간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 상당액 과세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중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13. 12. 31. 까지 한시 적용) ○ (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0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 (비과세 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 어업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현재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 규모)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 소·젓소, 돼지의 공제 두수를 확대
-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금액) 현행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200만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 부업 가축 규모 - 소·젓소 30마리 - 돼지 5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 부업 가축 규모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	☐ 비과세 범위 확대 ☐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 추가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젓소 30 → 50마리 - 돼지 500 → 7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 1,800 → 연 2,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7.5억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기준금액은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0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 : 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6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09년 개정)됨에 따라 중간예납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15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신고납부 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 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08년 개정*)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2012. 1. 1.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

0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85조의2)

가. 개정취지

- 결손금 소급공제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추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발생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 추징(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신 설>	-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0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

가. 개정취지

- 면세사업자처럼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연간 2회)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연간 1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만 신고 - 과·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1회로 통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사업자의 자진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진발급을 유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신 설>	☐ (좌 동) ☐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 거래*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 전문직사업자, 음식점·장례식장 등 의무 발급 업종 : 30만원 미만 거래 * 의무 발급 업종 이외의 업종 : 모든 현금 거래
☐ 사업자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발급기한 연장 (거래 당일 → 5일 이내)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 증대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 특정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 수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만원 초과 접대비(경조사비 20만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 특정 국외지역 지출 :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추가 -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상여금 등):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신 설> ○ 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좌 동) ○ (좌 동)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 문의사항 : ☎ (02) 397-7572~5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8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69
3.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70
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71
5.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72
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시 비과세제도 보완	73
7.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74
8.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신설	75
9.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예외 경우 추가	76
10.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	77
1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78
12.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79
13.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	80
14.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	81
15.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82
16.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	83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1세대1주택자의 거주요건 폐지로 인한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 지원
-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바146, 2011. 11. 24.)을 반영하여 혼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보완
-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해외주식을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6호) : 2012.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50호) : 2011. 6. 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8호) : 2011. 10. 14.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8호) : 2012. 2. 2. 공포

0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 1세대2주택 이상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자산	☐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 1기 5대 신도시 :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2년 거주요건 폐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요건 개정 연혁

구 분	양도시기별 보유·거주요건			
	'03. 9. 30. 이전	'03. 10. 1. ~'03. 12. 31.	'04. 1. 1. 이후	'11. 6. 3. 이후
서울·과천·5대 신도시 지역	3년이상 보유	3년이상 보유 + 1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
기타 지역	3년이상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6. 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3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주택규모 : 149㎡이하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0.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0.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5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가액기준 ○ 매입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 건설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기준 보완 ○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0. 14.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0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시 비과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 제167조의3제5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사후 관리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양도세 지원 대상)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일반주택 : 양도세 중과배제 - 거주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 2년이상 거주 □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전, 일반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시 사후관리 ○ 원칙 :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비과세 세액 등 납부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 사용하는 것으로 봄 ※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좌 동) ○ 임대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되는 경우 예외 추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前6월 부터 준공일 後 6월까지의 기간은 6월 초과여부 계산시 미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재개발 · 재건축되는 분(시행일 현재 재개발 · 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부터 적용

07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개정취지

- 직계존속의 동거분양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추 가>	☐ (좌 동) ☐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8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바146, 2011. 11. 24.)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등 위헌소원)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 양도시 ○ 중과세율(60%) 적용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경우 - 합가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수에 따른 세율 적용 * (1주택)일반세율(6~35%) 적용, (2주택)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3주택 이상) 3주택 중과세율(60%) 적용 ** 단, 동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안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바146, 2011. 11. 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09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예외 경우 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가. 개정취지

- 1주택에 대한 재건축(개발)사업 시행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경우로 그에 따라 양도된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신 설>	□ 2년 양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추가 (좌 동) - 재건축(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 청산금 지급요청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양도분(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

10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가. 개정취지

-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 실수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시기 : 제한 없음	○ (좌 동) ○ 양도시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3년이내 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판정일을 양도일로 함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양도세 예정신고 · 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소득세법 제118조의8)

가. 개정취지

-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예정신고 · 납부 대상 ○ 주식*(해외주식 포함), 부동산 등 * 국내주식의 경우 :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주식	○ 해외주식*을 대상에서 제외 * 소법 §118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국내 증권시장상장 주식 등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시개발법」에서 입체환지도 환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개념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지처분의 정의 ○ 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완료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토 지 ↔ 토 지	□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의 개념도 포함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4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무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대상 : 확정신고 무신고자	○ 대상 추가 : 확정신고 무신고자, 예정신고 무신고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15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용어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 “체비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 “보류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 도시개발법 §3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

가. 개정취지

-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여부 판정요건을 완화하여 수용농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의 경우 ○ 재촌요건을 20km 이내 → 80km* 이내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원천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을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남승

◎ 문의사항 : ☎ (02) 397-7552~7555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88
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90
3.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91
4.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92
5.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93
6.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94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95
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96
9.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97
10.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98
1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99
1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	101
1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102
1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	103

소득세법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을 환원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고등학생 · 대학생의 경우 국외유학자격 요건 삭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일원화 함
-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 신설
- 임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6호) : 2012.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8호) : 2012. 2. 2. 공포

0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table border="1"> <thead> <tr> <th>총 급 여</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td>80%</td></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td>50%</td></tr> <tr> <td>1,500~3,000만원 이하</td><td>15%</td></tr> <tr> <td>3,000~4,500만원 이하</td><td>10%</td></tr> <tr> <td>4,500~8,000만원 이하</td><td>5%</td></tr> <tr> <td>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td><td>3%</td></tr> <tr> <td>10,000만원 초과('12년부터)</td><td>1%</td></tr> </tbody> </table>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 공제율 축소 환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 급 여</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td>80%</td></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td>50%</td></tr> <tr> <td>1,500~3,000만원 이하</td><td>15%</td></tr> <tr> <td>3,000~4,500만원 이하</td><td>10%</td></tr> <tr> <td>4,500만원 초과</td><td>5%</td></tr> </tbody> </table>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공제한도 : 50만원 * 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축소 환원 ○ (좌 동)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 축소('12년부터) <table> <tr> <th>총 급 여</th><th>공제율</th></tr> <tr> <td>8,000만원 이하</td><td>50만원</td></tr> <tr> <td>8,000~8,500만원 이하</td><td>40만원</td></tr> <tr> <td>8,500~9,000만원 이하</td><td>30만원</td></tr> <tr> <td>9,000~9,500만원 이하</td><td>20만원</td></tr> <tr> <td>9,500~10,000만원 이하</td><td>10만원</td></tr> <tr> <td>10,000만원 초과</td><td>0원</td></tr> </table>	총 급 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 <삭 제>
총 급 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 <추 가>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전담 요원 등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 <삭 제> - (좌 동) - (좌 동)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04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월 150만원	☐ 비과세한도 확대 ☐ 월 150만원 →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 공제한도 :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 :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 고등학생·대학생 :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대상 급여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 : 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 연 1,500만원 ①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500만원 : 기타 대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8 장애인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아동 재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추 가> - 공제한도 : 없음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좌 동) -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인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 : 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 : 채권등 이자·할인액을 지급 받는 경우 등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 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 명예퇴직수당 ③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 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 : 법령 §20 ① 4 준용

종 전	개 정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 - '11. 12. 31. 중간정산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text{평균급여}^* \times 1/10 \times \text{'12년 이후 근속연수} \times 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 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1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
 - *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령 §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 1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 1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 $2\%(\text{지연제출 } 1\%) \times \text{미제출} \cdot \text{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 문의사항 : ☎ (02) 397-7572~5

1.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108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설	112
3. 가업상속공제 확대	114
4.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115
5. 영농상속 공제금액 확대와 공제대상 합리화	116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117
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118
8.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119
9.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명확화	120
1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121
11.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규정 신설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공정사회 구현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을 마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새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영농상속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조정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를 합친 경우와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허용
-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인건비를 제한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를 개선
- 부동산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0호) : 2011. 12. 3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1호) : 2012. 2. 2. 공포

0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가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로 활용되면서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공정사회 구현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과세대상자 ○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대주주(개인) ※ 지배주주 : ① 또는 ②의 자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개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비율

종 전	개 정
<신 설>	※ 지배주주 판정시에는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 ※ ① 또는 ②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1인 *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친족 :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제1항제3호~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다음의 법인은 제외함* * 수혜법인별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여부를 판단 ·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거래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직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직접보유비율 - 3%*) * 3%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서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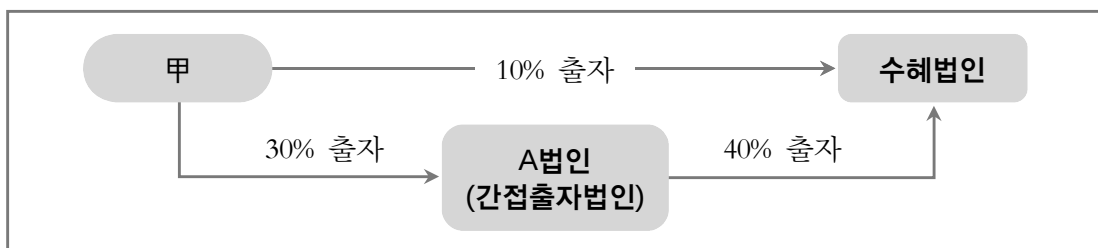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신 설>	② 지배주주 등이 하나 이상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 법인에 출자한 경우(간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간접보유비율* - 3%) * 간접보유비율 :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보유비율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함 ※ 간접출자법인*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다음의 법인(다만 지배주주와 친족이 50% 미만으로 출자한 지주회사는 제외) (i)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ii) 지배주주와 친족 및 (i)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iii) (i) 및 (ii)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보유한 경우만 과세하면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되 지배주주 등이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간접출자법인까지 확대 하는 경우 과세실익은 적으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일정 범위로 제한 ※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매출한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해당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 (가)* × $\frac{[\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text{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비율}]}{\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가) :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한 세법상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를 차감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 ** $\frac{\text{법인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 차감)}}{\text{세법상 영업손익}} \times \frac{\text{세법상 영업손익}}{\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 기타 : ○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에 포함, 증여공제(상증법 §55)는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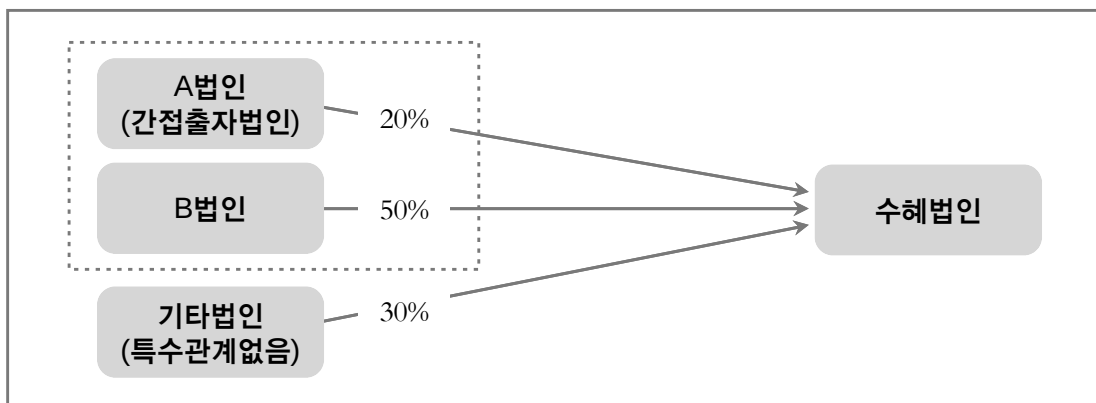


※ 주식보유비율(22%) = 직접출자(10%) + 간접출자(12%)

* 간접출자 = 30% × 40% = 12%

* 수혜법인과 A법인과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3. 증여의제이익(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각각 계산하여 합함) : ① + ②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0%(직접보유비율)

② 간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2%* - 3%**] × $\frac{70\% - 20\%^{***}}{70\%}$

*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 거래비율

02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비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새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대주주의 정의(§19②) ○ 주주 1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1. 친족(국기령 §20 1호~8호) 및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사용인 및 해당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임원 포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와 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1호~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3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최대주주의 정의(§19②) 명확화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12의2)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특수관계인 범위(§12의2) 신설 ○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1. 친족(국기령 §1의2①)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돈) 2. 사용인 및 사용인 외의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임원 포함)

종 전	개 정
6. 주주등 1인과 1호~5호의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7. 주주등 1인과 1호~6호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8. 주주등 1인과 1호~8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임원 포함)와 본인을 지배하는 자 및 그의 친족등 4. 본인, 1호~3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3호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5. 3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5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5호의 자가 공동으로 30%이상 출자한 법인 7. 본인, 1호~6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6호의 자가 공동으로 50%이상 출자한 법인 8. 본인, 1호~7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7호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03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 사후관리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 고용요건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중견기업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이상 유지 - 그 외 : 고용요건 없음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70% ○ 공제한도 :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300억원 한도 * 10년이상 : 100억원, 15년이상 : 15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 사후관리 보완 ○ (좌 동) ○ 고용요건 - (좌 동) - 그 외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이상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 상속분부터 적용

04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법인세법」적용 가업 - 법인의 주식	□ 가업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좌 동) ○ 「법인세법」적용 가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주식 평가액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 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05 영농상속 공제금액 확대와 공제대상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2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공제한도 : 5억원
☐ 영농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거주지 요건 ·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으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좌 동) * 거주지요건 확대 ·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 직선거리 20Km(추가)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금액 확대 : 2012. 1. 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 범위 : 2012. 2. 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06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지원하고,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 아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부득이한 사유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 혼인합가* *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추 가>	□ 동거주택 대상 확대 ○ (좌 동) ○ 직계존속 동거봉양, 피상속인의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합가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0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인건비를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 다음의 사용금액 제외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외에 소요되는 관리비(상증칙 §10의6①) <추 가>	☐ 과다인건비 제한 ☐ (좌 동) ☐ 다음의 사용금액 제외(시행령에 직접 규정) - (좌 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 *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개인 기준)가 8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다만,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매사례가액 ○ 평가기간*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 (좌 동) - (좌 동)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09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에 기준시가의 유사성 여부를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평가 방법 ○ (원칙)상속·증여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예외)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좌 동) ○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기준 추가 - “기준시가”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1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 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 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11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규정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가. 개정취지

-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 평가방법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 신설 ○ 외화자산·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증령 §58의3) ① 상증법 평가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평가액이 없는 경우 20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 가액 ※ 평가의 원칙 등(상증칙 §15) ② 국외재산의 가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 문의사항 : ☎ (02) 397-7572~5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	126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127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128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129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130
6. 리츠·펀드가 취득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131
7. 신탁회사가 취득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132
8.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 임대 간주기간 연장	133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현재도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간 종료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 ‘호수 요건’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 주택의 중부세 부담을 완화
-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중부세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와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민간투자상품을 지원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813호) : 2011. 3. 31.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52호) : 2011. 6. 3.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4호) : 2012. 2. 2. 공포

가. 개정취지

- 현재도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을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1주택 과세특례 ☐ 지방1주택* 비과세(법 §8, 영 §4) *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지방1주택은 소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영 §2의3) * 9억원공제(일반 6억원공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적용	☐ 지방 1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 '09. 1. 1.~'11. 12. 31. ☐ (삭 제) * 단순 조문정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호수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주택규모 : 149㎡이하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좌 동)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0. 14.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주택 세제지원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공제, 장기보유 ·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0. 14.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 등록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합산배제	☐ 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중부세 합산배제 적용
 -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한 미분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 따라 중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 해소
 -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 ** 주택법상 사업자, 건축법상 사업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 주택법·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다만,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은 제외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3. 3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6 리츠·펀드가 취득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6호)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펀드 : 「자금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11. 4. 30. 까지 취득한 '10. 2. 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리츠·펀드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세제지원 요건 완화 ○ '12. 12. 31. 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6. 3.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7 신탁회사가 취득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7호)

가. 개정취지

-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를 것 ①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 '11. 4. 30. 까지 취득한 '10. 2. 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신탁재산의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좌 동) ○ '12. 12. 31. 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지역요건 없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6. 3.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8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 임대 간주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공가시 임대기간 계산 ○ 기존임차인 퇴거후 1년 이내의 공가 기간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 “1년” → “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6. 3.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62~5

I. 기업경쟁력 강화	140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140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141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142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143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144
6.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145
7.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146
8.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148
9.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	149
10.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150
11.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151
12.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152
13.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153
14.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154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155
16.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156
17.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158
18.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159
19.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160
20.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	162
21.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164

II.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165
2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65
23.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166
2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67
25.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168
2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169
27.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170
28.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172
29.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173
III.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74
30.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174
31.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175
32.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	176
33.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177
3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178
IV. 기타 제도보완	179
35.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179
36.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180
37.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181
3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182

39.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183
4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184
4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185
4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186
43.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187
4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88
45.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189
46.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190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K-IFRS 도입 전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K-IFRS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무형자산으로 별도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한해 신고조정 허용
- 일부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합병·분할법인의 사후관리 요건위배로 합병법인이 과세이연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주식의 50% 이상 보유하도록 함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되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여 양도차익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보완
-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명시
-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8호) : 2011. 12. 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9호) : 2012. 2. 2.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 2012. 2. 28. 공포

I. 기업경쟁력 강화

0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table><tr><th rowspan="2">과세표준</th><th colspan="2">세율</th></tr><tr><th>'11</th><th>'12</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d>10%</td></tr><tr><td>2억원 초과</td><td>22%</td><td>2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1	'12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초과	22%	20%	□ 중간세율 구간 신설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2~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td><td>22%</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11	'12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초과	22%	2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2조의2)

가. 개정취지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 -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연장

0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 : 매각거래** *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좌 동) ○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 (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 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좌 동) ☐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 (환수)하는 상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 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예 : 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7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법인세법 제76조의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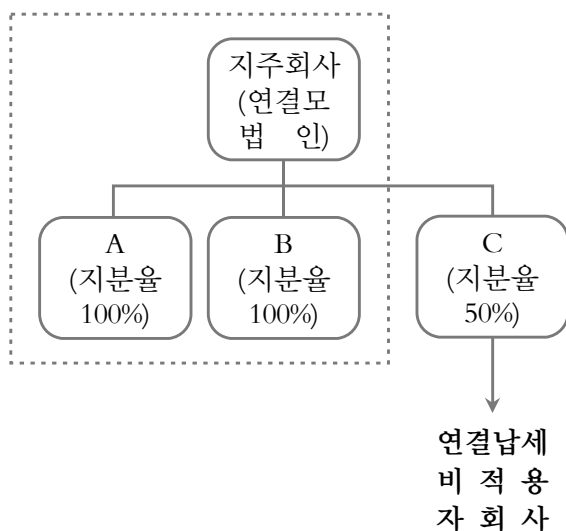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 : 100%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좌 동)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연결납세 적용>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30% 이하	30%
30%초과 100%미만	50%
100%	100%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20%이상 40%이하	80%
40% 초과	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법인세법 제76조의12)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자법인 해산시 ○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 분부터 적용

09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가. 개정취지

-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허용하여 조세의 중립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모법인 적용제외 대상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중인 법인 등 ○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 연결모법인 적용 허용범위 확대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 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 「상법」에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합병과세특례대상에 삼각합병을 도입

*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개정 「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12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법인세법 제17조·제76조)

가. 개정취지

-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

13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잉여금이 합병 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 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 중 과세된 것, ㉢)은 의제배당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합병차익 구성순서</th><th>의제배당 과세여부</th></tr> </thead> <tbody> <tr> <td>㉠ 자산조정계정</td><td>○(과세)</td></tr> <tr> <td>㉡ 합병감자차익</td><td>×</td></tr> <tr> <td>㉢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td><td>×(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td></tr> <tr> <td>㉣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td><td>○(과세)</td></tr> </tbody> </table> - 상기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 ㉡, ㉢, ㉣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감자차익	×	㉢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감자차익	×										
㉢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법인세법 제44조)

가. 개정취지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별도의 요건*없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 * 요건 : ① 사업목적의 합병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45조·제46조의4)

가. 개정취지

-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 적격분할, 자산의 포괄적양도 포함 <신 설>	○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 하는 분부터 적용

16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82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보완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 하되 ○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동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 <산식> $\frac{\text{합병대가 중 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합주식취득가액}}$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 조정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봄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산식> 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 \text{2년 이내 취득한 주식가액}}{\text{포합주식가액}^*}$ 합병대가 *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종 전	개 정
	* 포함주식가액은 포함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②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text{포함 주식} - \text{2년 이내 취득한 포함 주식 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함주식가액}}$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요건 계산 사례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150 지급
- 피합병법인 주주(합병법인 제외) : 100 지급
 - 합병법인(포함주식 보유) : 50 지급
 - *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 2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20

가.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150}}{\text{합병대가 150} + \text{포함주식 30}} = 83\% \text{ (적격)}$	$\frac{\text{주식 150} - \text{2년 이내 포함주식 30}}{\text{합병대가 150}} = 80\% \text{ (적격)}$

나.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100}}{\text{합병대가 100} + \text{포함주식 30}} = 77\% \text{ (비적격)}$	$\frac{\text{주식 100} + \text{교부간주 50} - \text{2년 이내 포함주식 30}}{\text{합병대가 100} + \text{교부간주 50}} = 80\% \text{ (적격)}$

17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제82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함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여부에 따라 합병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재법인-351(2011. 4. 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 12. 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그 지분을 이상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frac{\text{합병주식 총액}}{\text{지배주주의 지분합계}^*} \times \frac{\text{피합병법인의 전체지분}^*}{\text{합병법인의 전체지분}}$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지분 제외(재법인-351, '11. 4. 22.)	☐ 지분의 연속성 판단 시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배정요건 판단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8 합병 · 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제80조의4 · 제82조의2 · 제82조의4)

가. 개정취지

-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 · 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 지분을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신 설> ☐ 합병 · 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 ☐ 합병 · 분할등기일 및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완화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봄 ☐ 합병후 지배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 순서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사후관리 기간 완화 ☐ 3년 → 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식보유요건 및 주식처분 순서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9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법인세법 제47조·제47조의2)

가. 개정취지

-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 분할법인 : 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신설법인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2011. 12. 31. 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물적분할 과세체계

구 분	기 존			개 정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처분시 과세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자산처분시 과세		
분할 신설법인	자산조정계정 계상 ←-----→ 자산처분시 과세				←-----→ 자산처분시 과세	

20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84조의2)

가. 개정취지

-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를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출자지분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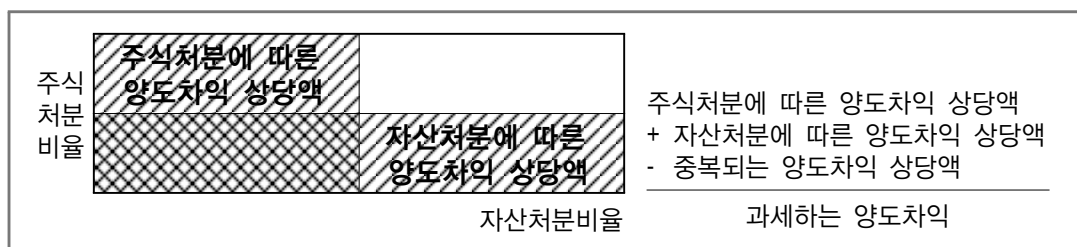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유휴설비 포함) ☐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 계산 도해



21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주식의 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 주식의 취득가액 ○ 물적분할·100% 지분을 취득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양도한 순자산의 시가 ○ 기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2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 1년	○ (좌 동) ○ 연장 : 1년 →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3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가. 개정취지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좌 동)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 목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5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①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 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 병원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 교실 및 노인휴양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 대가 전부 부담 시설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으로 인정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 인정, 외국법인 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 소득으로 유지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

가. 개정취지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정치활동 불가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사항 추가 ○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 학교 등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무 이행 사항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 위반, 요건충족 여부 미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의무이행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등과 한국학교의 경우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지정취소 요건 추가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익목적지출 : 2012. 2. 2. 이후 최초로 지정·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 : 2012. 2. 2. 이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28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 금액 -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경영사업 <추 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Ⅲ.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30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가. 개정취지

-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 분부터 적용

31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법인세법 제76조제8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부과기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2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제5항·제152조제2항·제161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가산세 부과대상을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기업의 주식등의 실제소유자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2. 1. 1.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3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법인세법 제79조)

가. 개정취지

-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①) - 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② 자기자본 : 자본금 + (잉여금 - 이월 결손금*) + 법인세환급액 * 잉여금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

3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법인세법 제120조)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

IV. 기타 제도보완

35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 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거래 :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거래 :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7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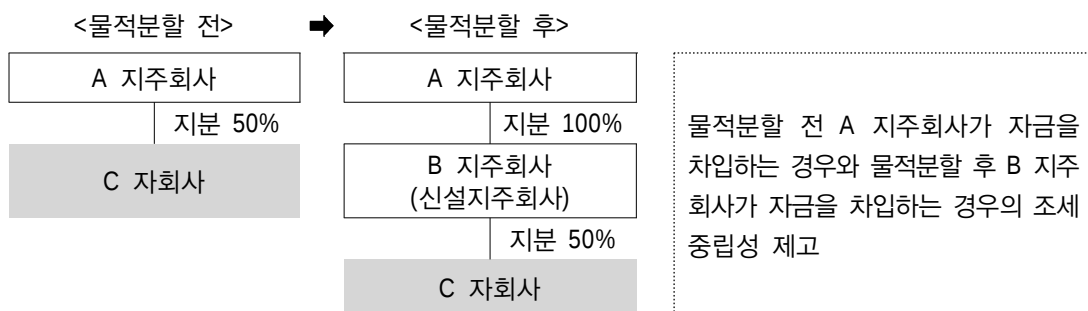
-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 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 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 \frac{\text{차입금}}{\text{이자}} \times \frac{\text{익금}}{\text{불산입률}} \times \frac{\text{세무상 주식 장부가액}}{\text{회계상 자산총액}}$	□ 지주회사(A)가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9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 : 진행기준 ○ 예외 : 인도기준 허용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예 : 예약매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8.5% ('09. 3. 30. ~)	☐ 당좌대출이자율 ☐ 6.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추징기간 일수 × 1일 3/10,000(연 10.95%) <신 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상당액 경감 ○ (좌 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연 4.0%)을 적용 *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3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법인 ○ 조합법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주주등이 공공기관 또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사모투자전문회사*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9)	<삭제> (제출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5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법인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직전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 중간예납 면제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6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85조)

가. 개정취지

-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②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국가가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 (좌 동)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①,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12. 1. 1.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 성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194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	195
3.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199
4.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200
5.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	201
6.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	20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100% 인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등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규정
-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외국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채권확보 방안 마련
- 비거주자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상 가격 적용요건이 거주자 등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 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대상 범위 확대
-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6호) : 2012. 1. 1. 공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8호) : 2011. 12. 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8호) : 2012. 2. 2.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9호) : 2012. 2. 2. 공포

0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시행령 제104조의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 체결* : 100% *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규정된 경우 (19개국) ○ 조세조약 미체결** : 50% ** 조약 체결국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없는 국가 (58개국) 포함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100%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

(소득세법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 제207조의9, 법인세법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 제138조의8)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1)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종 전	개 정
<신 설>	① 투자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3년후 새로 제출, 3년내 변동시 변동내역 제출 - 해외발행 예탁증서의 외국인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연금 ·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종 전	개 정
<신 설>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10. 10. 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계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2)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종 전	개 정
<신 설>	①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국외에서 설립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행위를 하는 단체 ① 국외사모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방법 -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 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종 전	개 정
<신 설>	②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 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 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 (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절차 간소화 내용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3)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4)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 의무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 기구신고서 등 자료의 보관 의무(5년) 및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요구시 제출 의무 등 부담

5) 정상과세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사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시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 경정청구 보정요구 ☐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 요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03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법인세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2)

가. 개정취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소재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증여한 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조세채권 확보장치 마련
 - 증여자가 원천징수 불이행시 국내소재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
 - 따라서, 국내 소재 자산을 증여받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 필요
- * 수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조세채권 확보 가능(상증법 §2①2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소재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증여자가 수입금액의 20%를 원천징수(법법 §98①3호) <신 설>	○ 증여자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시 - 수증인이 수입금액의 20%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 * 신고서 제출기관 -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기타) 해당 자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4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요건이 거주자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 법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수입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조정 * 국조법 §5, 국조령 §4를 준용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추 가>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은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 거주자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일치

* 현행 특수관계인간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체계

구 분	비거주자(소법 §126③)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법법 §92②2호)	거주자(소법 §101, 소령 §167) 내국법인(법법 §52, 법령 §88)
부당행위 부인요건	정상가격 > 거래가격	(시가 - 거래가액) ≥ [3억원 OR 시가×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자회사·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직·간접 소유비율이 20% 이상(2012년부터 10% 이상으로 확대)인 경우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자회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손회사에 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 발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대상)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 ○ (제출자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대상추가)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간접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 * 개정내용 도해 [현행] 자회사만 적용 ⇒ [개정] 손회사까지 확대 1억이상 투자 ⇒ 10% 직접소유 실효세율 15%이하 ⇒ 추가 10% 간접소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가. 개정취지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인정배당에 대하여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다는 심판례 반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 대상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 <추 가>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 추가 ○ (좌 동) ○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지급보증 포함)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배당처분, 지급보증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기타사외 유출 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 성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	206
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신설	207
3.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209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210
5.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211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	213
7.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214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215
9.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216
10.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 폐지	218
1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허용	219
1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	220
13.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규정 명확화	221
14.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	222
15.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가격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세조정 절차 마련 및 국세 등의 부과·징수의 원활화를 위해 국세-관세 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규정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화하고 수정·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면, 과태료율 상향 조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지분보유요건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지주회사가 다른 지역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배당간주를 면제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령화하는 등 이전가격세제 관련규정 보완
-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
-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 제고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6호) : 2011. 12. 3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0호) : 2012. 2. 2. 공포

0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 - 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수입시 관세 신고가격에 대한 세관의 경정처분에 따라,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 「관세법」에도 대응조문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납세의무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당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 *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 ○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 -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받아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7~10명으로 위원회* 운영 * 민간위원 3명 이상 포함,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 의결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및 조정심의 배제 ○ (조정신청방법) 납세의무자의 조정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 과세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 - 조정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의 보정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 보정기간은 조정기간(90일)에 불산입 ○ 조정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 신청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정상가격 산출방법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사전 승인된 거래인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거래인 경우 -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심의가 곤란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부터 시행

03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 부과·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등을 위한 관세의 과세정보 또는 자료 요구 ○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 「관세법」에도 대응조문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

0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내국법인 ○ 신고의무 면제(①, ② 모두 충족) ① 국내 거주기간 : 1년 이하 ② 재외국민 : 정의 없음 * 신고시기 : 당해연도 해외금융계좌 보유분에 대해 익년도 6월중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① 국내 거주기간 :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기산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 * 거주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준용 ② 재외국민 정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자거시정 기회 제공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행 과태료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소(미) 신고금액</th><th>과 태 료 부과기준</th></tr> </thead> <tbody> <tr> <td>20억 이하</td><td>과소(미)신고금액 × 3%</td></tr> <tr> <td>20억 초과 50억 이하</td><td>6천만원 + 20억 초과 금액 × 6%</td></tr> <tr> <td>50억 초과</td><td>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td></tr> </tbody> </table> *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단, 가중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적용)	과소(미) 신고금액	과 태 료 부과기준	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 ×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만원 + 20억 초과 금액 × 6%	50억 초과	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신설 ○ 수정신고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경우 ③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 기한 후 신고 요건 : 신고기한내 미신고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서 제출 □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 ○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20 - 1년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과소(미) 신고금액	과 태 료 부과기준								
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 ×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만원 + 20억 초과 금액 × 6%								
50억 초과	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								

종 전	개 정
	○ 신고기한 후 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서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0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20억이하 : 3% ○ 20억 초과 50억 이하 : 6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6% ○ 50억 초과 : 2.4억 + 50억 초과금액 × 9% * 과태료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신고대상 연도별로 과태료 한도 계산)	☐ 과태료율 상향 조정 ○ 4% ○ 8천만원+20억 초과금액 × 7% ○ 2.9억+50억 초과금액 ×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

가. 개정취지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에 투자한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유내역이 파악 가능한 점을 감안
 - * 국내에서 해외주식 거래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주식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 (상증법 §82③)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해외금융계좌 신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추 가>	□ 신고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대상 계좌 :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0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개정취지

- 국제적 지분요건 기준* 과 동일하게 제도운영

*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1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지분보유 요건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중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09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가. 개정취지

-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 해소

* 저세율(실효세율 15%이하)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면제 요건 ○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 *EU, 중국과 홍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해외지주회사는 배당간주규정 적용 배제 ①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 주식(4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배당 기준일 현재) *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 ②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소득 [(이자, 배당) / 소득금액* ≥ 90%] * 능동적 사업소득 제외(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소득은 포함)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 (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예시 (화살표는 지배방향*) > * (지배요건) 40% 이상지분을 6개월 이상보유 <pre> graph TD A[한국 모회사] -- "특수 관계" --> B[아일랜드 지주회사] B --> C[모로코 판매자회사] B --> D[영판자회사] B --> E[국매자회사] B --> F[네덜란드 판매자회사] B --> G[폴란드 제조자회사] </pre>

종 전	개 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설명) 모로코에 판매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수취 요건 (90% 이상 이자·배당) 충족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

가. 개정취지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직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이 기 폐지
(2010. 12. 27. 국조법 §20① 개정)된 것과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후, 실제 배당받은 경우 익금불산입 방법 ○ 특정외국법인 지분 직접보유시 - 기간제한 없이 익금불산입 ○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보유시 - 소급하여 10년 내 배당간주금액 범위내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10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허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4조의6)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에 대하여도 국제거래명세서*와 동일하게 제출기한 연장 허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에 확정 신고시 제출 <신 설>	☐ 제출기한 연장 허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장승인 신청 - 1년 범위 내 제출기한 연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 : 화재·재난·도난, 사업상 중대 위기,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등 (국조령 §2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화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현행 국세청장 고시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3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규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법률 및 시행령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치시키고, 자료 미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규정상 이전가격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조법 §12) ○ 시행령에서는 자료미제출에 대하여만 과태료 부과(국조령 §51①) □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1~3호)별로 일괄적용하는지 개별 자료별로 별도적용하는지 불명확* * (예) 제51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자료중 2건 이상 미제출시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하는지 여부 ※ (과태료) 제51조제1항제1호의 자료 미제출(5천만원), 제2호의 자료(3천만원), 제3호의 자료(7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불일치 해소 ○ 거짓의 자료 제출을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 별로 일괄 적용* * 각 호에 열거된 자료를 2건 이상 미제출시에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 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국조법 §2①5) * 일반적 상호합의 ** 구체적 상호합의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 OECD 상호합의 실무매뉴얼의 권장사항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

15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3천만원 이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정부는 체약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주자·내국법인 등의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OECD 정보교환 기준요건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29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30
3.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	231
4.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	232
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233
6.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234
7. 전문직 사업자(의사업) 부가가치세 관리제도 보완	235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명확화	236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 연장	237
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238
11.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40
12.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	241
13.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치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242
14.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	244
15.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과세 제외	245
16.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	246
17.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 조정	247
18.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249
19.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51
2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업무 등 면세	252
21.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53
22. 재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보완	254

23.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	255
2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256
25. 금전 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	257
2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	258
2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259
2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합리적 조정	260
29.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의 합리적 조정	261
30.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262
3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263
3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265
3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	266
34.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폐지 등	267
35.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허용	268
36.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269
37.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270
38. 영수증 발급대상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추가	271
39.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272
40.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	273
4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제외 사업 추가	274
4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	275
4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276
44.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업 등 추가	277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면세하여 동물진료용역 과세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금전의 대가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여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 증진
-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하여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
-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삭제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확대를 통한 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 등
-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1129호) : 2011. 12. 3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5호) : 2012. 2. 2.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269호) : 2012. 2. 28. 공포

0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 22601-52, 1992. 4. 22.)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므로
 -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가임대와 과세 형평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과세표준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가. 개정취지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3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가. 개정취지

- 법령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세법상의 일반적 분류인 자동차 분류 기준에 일치
 - 구입비·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대상 차량 범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용 차량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영업용인 것을 제외) ※ 영업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4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가. 개정취지

-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공제 매입세액 범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추 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 종전은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확정신고기한 ☐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외국법인도 25일로 통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6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① - ②)세액의 1/2 고지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신용카드 등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1.3%, 2.6% 세액공제 ** 전자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 <추 가>	 - 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07 전문직 사업자(의사업) 부가가치세 관리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11. 7. 1. 부터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됨에 따라 다른 전문직 사업자 등과의 형평 감안 시 이들에 대하여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필요
-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의사업 간이과세 배제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 사회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사회서비스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등(수의사 제외) <추 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보건업(병·의원)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사업자에게 세액 계산 편리, 기장의무 완화, 신고·납부 편의 제공 등 혜택 부여 ○ 변호사업, 회계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영위 사업 <추 가>	○ (좌 동) ○ 보건업(병·의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 시 조세마찰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1%) - 발급시기(익월 10일)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명확화 -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 이내에 발급한 경우 -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 협력부담 완화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특히, 2012. 1. 1. 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기한을 2011. 12. 31. 에서 2013. 12. 31. 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공제세액 : 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일몰기한 : 2011. 12. 31.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일몰 2년 연장 (2011. 12. 31.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하고
 -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용역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함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 9. 2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2011. 9. 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대리납부)	☐ 대리납부 대상 추가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과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 (종전과 같음)

종 전	개 정
○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공급받은 용역과 무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는 대리납부 의무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5항)

가. 개정취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또는 무체물 공급 시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시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공급으로 봄(부가법 §6⑤) <신 설>	<특례 신설>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이나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봄 ☐ 세금계산서 발급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등의 상호, 주소를 부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용역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제행사 등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편의를 지원하고, 임시사업장* 개설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 * 임시사업장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
 - ** 현행 규정은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이 마련(임차)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 만큼 자금부담 초래
- 사업 시작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설치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기한 ☐ 임시사업장 사업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	☐ 임시사업장 사업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개설하는 임시사업장부터 적용(다만, 2012. 2. 2.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치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제2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민간자금 활용으로 비축 원자재를 확대*하여 비상시 위기대응능력(특히,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 및 물가 등)을 향상시키려는 조달청의 민관공동비축사업** 지원

* 주요 원자재 60일분 수입확보를 위해서는 약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나, 현 조달청 비축자금은 약 9천억으로 부족

** 조달청은 낮은 창고료율과 높은 공신력으로 원자재 비축에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물기반 ETF 상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를 보세장치장으로 설영특허 받음('11. 7월)

- 활성화될 경우 조달청 창고가 아시아 지역 물류허브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다른 보세구역(LME)으로 물품 이동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물기반 ETF*거래를 통한 민관공동비축사업 활성화 가능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로 한국거래소에 주식과 같이 상장

- 실물기반 ETF 상장 추진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수단 다양화 등 금융 시장 선진화 제고

- 조달청 창고증권과 런던귀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증권과의 과세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 런던귀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는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	□ 조달청 창고를 LME창고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 <괄호 신설>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조달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는 임치물이 조달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 (종전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양도되는 조달청 창고증권부터 적용

14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간주공급의 적용 대상인 재화에
 - 사업양수도로 양수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사항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하는 때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10. 12. 개정)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신 설)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범위 조정 ☐ (좌 동)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개정 이전분은 해석에 따라 적용)

15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한전 등 사업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전력 등의 요금이 전액 면제되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로 과세되는 불합리 개선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함으로써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과 관련된 증여(사업상 증여)는 과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추 가> ※ 특별재난지역에 전력요금 50%할인시 에누리, 100%면제시 사업상 증여로 시가과세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국내사업자 간 종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 다음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범위에 포함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외국인도수출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	☐ 첨부서류 추가 ☐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써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 : 매입계약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종분류 변경 반영
-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개인 등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당해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업종 정리

- ※ 종전에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던 업종 중 제외업종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사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구) 지질조사 및 탐사업
 - (구) 인물사진 촬영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 ○ 사업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종 전	개 정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컨테이너수리업 ○ 보세구역의 창고업 ○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좌 동) ○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 (좌 동)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 제64조제12항 · 제79조제6항)

가. 개정취지

- 동물진료용역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다음의 동물진료용역은 면세 - 가축·어패류 진료용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 (추 가)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 질병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 · 예방접종 : DHPP(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움,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면세대상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매출명세서 제출 ○ 매출대장 작성·보관 ※ 서식 시행규칙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질병예방목적 동물진료용역 : 2012. 2.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 동물진료용역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5호)

가. 개정취지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을 면제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
 -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하는 불합리함을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 응급환자이송용역 등 <추 가>	○ 산후조리원 용역(「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업무 등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제17의6호)

가. 개정취지

○ 면세대상 금융용역의 범위 명확화로 납세자와의 다툼 제거

- *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9, 2011. 9. 30.)
- *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4, 2011. 11. 29.)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추 가>	○ (종전과 같음) -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포함 ○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호의5)

가. 개정취지

- 유사한 자산관리·운용용역을 제공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운용용역이 면제되는 것과의 과세형평 유지
-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 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등 ○ (신 설)	○ 투자전문기관,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일반 수입재화와 의 과세형평 제고 및 부가가치세 단순화 기여
- 재수입 재화라도 사업자는 일반 수입재화와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 후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불필요
- 특히, 현행 제도는 재수입 대상이 승용차인 경우 재수입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이 없는 반면, 단순 국내 구입시만 세부담(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 재수입 면제는 수출이 무효화 되어 수출자체가 없어 수입품이 아니라는 논리로 관세 면제는 당연하나, 부가가치세는 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납부 → 세무서 환급 과정을 거치므로 수출시 영세율 적용받지 못한 재수입 재화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수입 시 면세 필요
- 일반 수입재화와 같이 수입 시 납부 후 세무서에서 공제받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모든 재수입 재화	○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수입 재화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23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2항)

가. 개정취지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 임대용역을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고 대금을 선·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 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스포츠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대금 및 상표권 사용대금 등을 선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 ○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 * 과세표준 : 선불대금 ÷ 계약기간의 월수 × 과세기간의 해당월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자가 공급 등 모든 간주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 과세표준 계산은 매입세액이 발생하지도 않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 하도록 하여 과세되는 법령 상호간 모순사항 제거
- 재고매입세액 가산 및 공제도 매입세액 공제받은 취득가액 기준임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가산 및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공제받지 아니한 취득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이 어려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범위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금전 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순서 (①→②) ①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비특수관계 자간 거래가격 <신 설> ②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부당행위계 산부인시 적용가격* * 원가 + (원가 × 수익율)	□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순서 (① → ② → ③ 순차 적용) ① (좌 동)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 관계자간 거래가격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약정기일 전 미수금 영수시 할인하는 경우만 매출할인에 해당됨을 명확화하여 회계기준 및 법인세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출할인액의 정의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외상판매에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정의규정 정비 <삭 제>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개인사업자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2년 제1기 의무발급대상자 :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기간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제53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를 줄여 전송기한내 거래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고,
 - * 월초 발급시 최대 45일 차이 발생하여 기재내용 임의조정 가능성 상존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분리운영에 따라 무지 등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등을 방지
 - 국세청은 ASP 및 ERP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발급내역이 일단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예정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자료상과는 관련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월 1회 제출로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전송기한 조정 ☐ 공급일 익월 15일 → 발급일 익일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공급일 익월 11일 *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방송사업자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일요일 등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로자 등의 사업자 불편을 해소
 - * 발급기한 후 지연발급시 1%, 미발급시 2% 가산세 부과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

가. 개정취지

-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시 영수증 발급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여부 ①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 세금계산서 발급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 영수증 발급	① (현행 유지)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 영수증. (단,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착오여부 관련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공급받는 자 확인 등이 어려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다량 발급되고 있는 상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제한하여 부정탈세 소지는 거의 없애면서 사업자의 조세불만은 해소 가능
-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경정 통지전까지 수정발급이 가능하여 세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수정발급 사유 확대 ○ (종전과 같음) ○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 * 영세율 ↔ 10%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발급 허용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3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경정청구·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한 납세 협력부담 완화
- 계약해제에 따른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가능
- 계약해제는 현재도 환입일(반품 등)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는 환입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입과 동일 취급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 작성일자 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비고 란 : 계약해제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발급 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수정신고	○ 작성일자 란 : 계약해제일 ○ 비고 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7. 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3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연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공제범위 명확화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내 발급받은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4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폐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74조의5제2항)

가. 개정취지

- 음식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 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적용대상 : 일반과세자(업종제한 없음), 간이과세자(음식업)
 - 공제율 : 음식업 → 개인 8/108, 법인 6/106('12년 말까지), 기타 → 2/10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금채취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을 어업”으로 정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업자가 농수산물 구입시 구입액의 일정율 세액공제 ☐ 공제율 : 3/103 (단, 2012. 12. 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개인의 범위 ☐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종사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일몰기한 폐지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소금채취업 종사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예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달리 차별할 이유 없는 점을 감안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 제도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6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가. 개정취지

- 납부세액은 소액인 반면, 신고부담만 커 자영업자들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적 예정신고제도 폐지
 - * 63만명이 신고대상에서 제외(62만명은 고지대상에서도 제외)
- 유형전환자(간이 → 일반)는 납부세액 산정기준이 다르고 1회뿐인 점을 감안하여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및 신규사업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원칙 : 예정고지* (예정신고 없음)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 예외 : - 선택적 예정신고 : 조기환급자 등 - 의무적 예정신고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폐 지> <예정고지로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제4항)

가. 개정취지

-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20%(2011. 12. 31. 까지 15%) - 음식업 · 숙박업 : 40%(2011. 12. 31. 까지 30%)	☐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 2014. 12. 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8 영수증 발급대상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사업자 편의 제고 및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공제 방지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목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용역 등 <추 가>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추가 ○ 과세되는 의료용역과 교육용역 부분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4호 · 제79조의2제2항제5호)

가. 개정취지

- 동일 물품을 매월 다량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이 불편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을 허용하여 사업자 편의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집단에너지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 현재 동일 · 유사물품을 공급하는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금계산서로 갈음되는 지로영수증만 발급 중
-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에는 열 외에 전기도 포함되므로 열 외에 전기 공급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 발급 업종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 영수증 발급 업종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사업	☐ 대상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집단에너지사업자(25) ☐ 산업용이 아닌 열 → 열 + 전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0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5항)

가. 개정취지

- 영수증 발급 후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 신규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 현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 후 과세기간내 지연발급 시 공급자 1%, 구입자 1%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 세금계산서 발급 ② ①외의 경우 :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① (현행 유지) ② 영수증 발급 후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2012.2.2.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제외
- * 공급 후 과세기간내 지연발급 시 공급자 1%, 구입자 1%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제외 사업 ☐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제외사업 추가 ☐ 과세되는 의료용역과 교육용역 부분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4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

가. 개정취지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단체 중 면세 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면제대상 단체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추 가>	○ (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 한국영상산업협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11년 설정 당시보다 인상(3.7%→ 4.0%) 된 것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 이자율 : 3.7%	☐ 이자율 조정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최초로 신고(4. 25.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4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업 등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사업자 편의 제고 및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공제 방지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등 <신 설>	☐ 대상 추가 ☐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제도 개선	282
2.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 조정	283
3.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명확화	284
4.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조정	285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286
6. 추계결정 사유 명확화	287
7.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대상 확대	288
8. 주류 수입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289
9. 소규모 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290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 주류제조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면허취득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 주류제조·판매업자가 법인전환 신청시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득 간주규정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을 기존의 1% 이상~ 10% 미만에서에서 1% 이상~5% 미만으로 조정
- 종전에 시행령에 반영하였던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규정을 법률에 규정 하고,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종전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세 표준을 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사유발생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
-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도 부여
-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로 규정
- 청문대상 행정처분의 범위 확대
- 주류수입면허 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 소규모 맥주의 과세표준 하향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관계법령】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4호) : 2011. 12. 31.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8호) : 2012. 2. 2. 공포

01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제도 개선

(주세법 제6조·제7조·제8조)

가. 개정취지

- 개인사업자인 주류·밀술·술덧제조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면허제도 개선
 - * 종전에는 판매업면허의 경우에만 법인전환에 따른 면허승계 허용
- 법인전환 신청자 등이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득 간주 규정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 * 종전에는 「주세법」 제8조3항에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후 제10조에서 면허승계를 제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면허승계 ○ 판매업면허 :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 면허취득으로 간주 ○ 제조면허 : 규정 없음	○ 판매업면허 :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포괄승계만 면허취득으로 간주 ○ 제조업면허 :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포괄승계의 경우 면허취득으로 간주(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전환 하는 분부터 적용

02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 조정

(주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종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비율에 의한 행정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판매업 면허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하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적용
- 정지처분의 경우 판매업면허자의 판매정지 기준을 수정 없이 준용함에 따라 5%이상 10%미만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에 의한 판매업면허 처분기준(종전)
 - 판매업면허 : 면허정지 1%이상 10%미만, 면허취소 10%이상
 - 제조면허 : 면허정지 0.5%이상 5%미만, 면허취소 5%이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매장 면허 행정처분 기준 ○ 면허취소 :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위반비율 5% 이상 ○ 면허정지 :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위반비율 1% 이상 10% 미만	○ (현행 유지) ○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비율 1% 이상 5%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03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명확화

(주세법 제2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존 시행령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임을 법에서 규정 (부가법 §13④)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 「주세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	☐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04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조정

(주세법 제23조)

가. 개정취지

-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일부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을 다음달 말일로 신고기한을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 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 공매 등으로 환가된 수량 또는 면허 취소시 제조장에 남아있는 수량만 적용, 정상출고분은 본래의 신고기한 적용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신고 -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주세법 제2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경정권한을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 관할 세무서장 <추 가>	○ (좌 동) ○ 관할지방국세청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추계결정 사유 명확화

(주세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21②)에서 직접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 추계결정 사유(주세령 §24) ▪ 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 장부 등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제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장부 등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종전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하였던 추계결정사유를 법률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추계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07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대상 확대

(주세법 제54조)

가. 개정취지

- 종전 주류 제조면허 등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청문제도를 정지 처분까지 확대 허용하여 국민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문대상 ○ 제13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취소 ○ 제14조에 따른 밀술 또는 술덧제조 면허의 취소 ○ 제1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의 취소	○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취소 ○ 제14조에 따른 밀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밀술·술덧의 제조 면허의 취소 ○ 제15조에 따른 주류 판매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08 주류 수입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가. 개정취지

- 주류유통구조의 개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수입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전업요건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수출입업의 면허 요건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의 제조·수출·수출입 중개업은 제외	☐ (좌 동)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2. 2. 현재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 및 2011. 2. 2.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09 소규모 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로 소규모 맥주 제조 활성화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맥주의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 관리비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95
2.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	296
3.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	297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재경정 사유 신설	299
5.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300
6.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	301
7.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	302
8.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	303
9.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	305
10.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306
11.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년 유예	308
12.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	309
13.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	310
1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311
15.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312
16.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313
17.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314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자동차 개발·양산 추이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도 과세대상에 포함
- 폐업 등 신고를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혼동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제·환급신청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의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경정권한을 부여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500만원) 설정
-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일치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귀책사유별로 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규정을 놓여민 면세유의 사후관리 규정 등과 일치시킴
-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을 보완하여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경우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 제고

주요 개정 내용

-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 조건부 면세된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신고·납부할 때 적용세율은 용도 변경 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세율 명확화
- 조건부면세 물품을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 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0호) : 2011. 12. 31.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7호) : 2012. 2. 2. 공포

01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 내연기관 자동차와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전기자동차는 공인된 배기량별 정격출력기준이 없으므로 대형·중형전기자동차를 구분하지 않고 5% 단일 세율 적용
 - 다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형승용차와 동일하게 경형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 배기량 2천cc 초과 : 10% 배기량 1천cc~2천cc : 5% 배기량 1천cc 이하 : 면제 ** 전기승용차는 과세제도 미비 <신 설>	○ (좌 동) ○ 전기승용자동차* 과세세율 : 5% - 다만, 경형 전기승용자동차**는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 **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02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임을 법에서 규정(부가가치세법 §13④)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및 그 외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수입신고할 때의 가격 및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 시행령에서 상기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03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7항·제20조제4항·제20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폐업 등 신고(사유발생일부터 25일 이내)를 과세표준 신고기한(신고하는 달 25일까지)과 혼동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사례 방지
 - *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신고 기준일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로 기 변경(부가가치세법 §19)
 - (예) 4월 10일에 폐업한 경우 5월 5일이 아닌 5월 25일까지 신고
- 종전 규정에 폐업 등 신고 사유로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업 등 신고사유에 추가
- 공제·환급신청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유발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 (예) 4월 10일에 환급사유(제조장 환입 등)가 발생한 경우 10월 10일이 아닌 10월 말일까지 신고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의 경우 일반적인 유류 물품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달의 말일(2개월 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 등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 신고사유 : ①과세물품이 경매·공매로 환가되거나 사실상 제조를 폐지한 경우, ②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등을 폐업하는 경우	☐ 폐업 등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 신고사유 추가 : ③과세물품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종 전	개 정
☐ 제조장 환입 등에 따른 공제·환급 신청기한 :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기한 ○ 가정용 부탄 : 다음달 말일까지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공제·환급 신청기한 조정 :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기한 ○ (좌 동)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신고·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0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재경정 사유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추 가>	☐ 재경정 사유 신설 ○ 결정·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 재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제1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21②)에서 직접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령§18 추계결정 사유 : 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개별소비세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해 5년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까지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한도 신설
 - 다만, 장애인 승차를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예) 본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고 특수장비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4,000만원으로 하여 감면한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전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 <신 설>	○ 감면한도 : 500만원 * 장애인 승차를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별소비세 감면분부터 적용

07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일치
 - * 법 제9조제1항 :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유류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 :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 유류 :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 : 현행과 같음(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신고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08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종전 규정상 가정용 LPG부탄의 환급신청자인 공급자(LPG부탄 제조·수입자 등)의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자(고압가스 제조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을 당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
 - * 면세유 관련 규정의 경우 주유소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정유사에게 추징하는 방식이었으나 '08. 7. 1. 이후에는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로 개정
 - * 택시연료 면세(조특법 §111의3) : 신용카드업자가 감면신청하나, 유류카드 부정 사용시 택시사업자에게 직접 추징하도록 별도 규정
- 부정환급의 경우 가산세 규정을 놓여민 면세유의 사후관리 규정 등과 일치시켜 40%의 가산세를 부과되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 제111조의3 택시연료면세 규정에서도 초과환급시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정용 LPG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환급신청자 : LPG부탄 공급자* * LPG부탄 제조자 및 수입자 ○ 환급사유 : LPG부탄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 ** 가스라이터, 이동식 부탄연료 등 제조자 ○ 환급액 : 232원/kg * LPG부탄(252원/kg)과 LPG프로판(20원/kg)의 세액차이	

종 전	개 정
☐ 부정환급 시 초과환급세액 및 가산세액 징수 ○ 추징대상 : 공급자(환급신청자) ○ 가산액의 가산율 : 1일 1만분의 5 (개소령 §34의2⑥)	○ 귀책사유별 세액 추징 ▪ 공급자 귀책사유시 → 공급자 추징 ▪ 사업자 귀책사유시 → 사업자 추징 ○ 가산세 40%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9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가. 개정취지

-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 제고
- * 신고·납부 주체와 관할세무서의 변경에 한정하고, 과세시기·과세표준 등은 변동이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 반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 <신 설>	○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한 반출자가 신고·납부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재판매·재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같은 송유관을 이용하여 이종(異種)의 유류 송유시에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
 -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교통세 등을 정산* 하여 신고·납부함
 - *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별소비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319원)을 추가 납부
 - 또한, 저유소에서 혼합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도 정유소에서 정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정산함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저유소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해당한다고 판결(2010두4452, '11. 4. 1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를 납세지로 하여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 납세절차 : 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과 교통세·교육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하므로 절차 복잡
 - * 반입시점의 혼유비율은 확정이 가능하나, 여러 시점의 혼유가 저유소에서 섞인 후 반출되는 시점의 혼합비율은 확정할 수 없어 과세표준 산정 곤란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와 첨가제에 대하여 정유소에서 신고·납부를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종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등)에 대한 신고·납부 ○ 당초 유류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의 사업자가 같은 경우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해 정유소에서 신고·납부함 ○ 과세표준은 혼유 등의 수량, 과세시기는 혼유 등이 발생한 때로 함 ○ 혼유 등의 유형과 개별소비세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저유소에 반입되는 혼유 및 혼합되는 첨가제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년 유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2년간 과세 유예
-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의 경우 현행대로 '12년부터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서울 : 총매출액 기준(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table border="1" data-bbox="284 1176 774 1406"> <thead> <tr> <th>연간 총매출액</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500억원 이하</td><td>0</td></tr> <tr> <td>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td><td>500억원 초과금액의 2%</td></tr> <tr> <td>1천억원 초과</td><td>10억원 + 1천억원 초과금액의 4%</td></tr> </tbody> </table>	연간 총매출액	세 율	500억원 이하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 + 1천억원 초과금액의 4%	
연간 총매출액	세 율								
500억원 이하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 + 1천억원 초과금액의 4%								
○ 과세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과세시기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강원랜드) : 2012. 1. 1. 부터 - 외국인전용 카지노 : 2014. 1. 1. 부터 적용 (2년간 유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가. 개정취지

- 수탁가공 여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를 고려하여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탁가공 물품에 대해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탁가공 요건 미비	○ 수탁가공 요건 명확화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 - 해당 제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수탁가공하여 수탁자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조건부 면세된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신고·납부할 때 적용세율은 용도 변경 시 세율을 적용
 - 다만, 당초 면세시보다 신고·납부시 세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면세시 세율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액 ○ 물품의 가격 -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가격 :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세율 규정 : 없음 * 조건부면세 시 세율인지 용도변경 시 세율인지 불명확	○ 세율 규정 신설 -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세율 : 용도변경한 때의 세율(다만, 조건부면세 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

가. 개정취지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절차·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납세반출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절차, 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 미납세반출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서 내용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반입지 관련 사항, 미납세반출한 물품, 그 밖의 참고사항 ○ 반입지를 변경하거나 특례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청, 변경, 포기)에 대하여 통지 ○ 반출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가. 개정취지

- 송유관을 이용해 제조자의 저유소를 거쳐 반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 등이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시행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혼유 등’의 범위 ○ 송유관을 거쳐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 저유소에서 첨가제 등을 혼합하는 경우 * 첨가제 등 : 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 착색제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자의 필요에 의해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함 □ 혼유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신고절차, 신고사항 등 구체화 ○ 제조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시 혼유 등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저유소 변경시 포함) * 신고서의 내용 : 사업자의 인적사항, 저유소 관련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조자등은 과세표준 신고시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고, 변경)에 대하여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혼유 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6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조건부면세 물품을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 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 ○ 반입한 날부터 5년 - 다만,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기간계산방법 불명확 예)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에게 양도	○ 재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현재 재반입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

17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가. 개정취지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에 따라 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세제외 규격을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의 과세제외 규격과 동일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세제외 규격 규정 ○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경매·공매·제조폐지 등, 공제·환급신청 등의 기한 조정	318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재경정 사유 신설	319
3.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320
4. 조건부면세 반입 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321
5.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322
6.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3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경매·공매·제조폐지의 경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일치시키고 공제·환급신청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공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경정권한을 부여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무신고시 본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부과 근거 마련
-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관계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3호) : 2011. 12. 31. 공포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9호) : 2012. 2. 2. 공포

01 경매 · 공매 · 제조폐지 등, 공제 · 환급신청 등의 기한 조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7조제4항 · 제17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경매 · 공매 · 제조폐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기한(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
 - * 제조장 폐업시에도 별도 규정이 없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폐업일이 속한 달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 공제 · 환급신청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사유발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매 · 공매 · 제조폐지 등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삭 제>
☐ 과세물품 등의 수출, 제조장 환입 등을 이유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교통세를 공제 · 환급 받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신고 · 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0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재경정 사유 신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제1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추 가>	☐ 재경정 사유 신설 ○ 결정 및 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 재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3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21②)에서 직접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령§14 추계결정 사유 : 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4 조건부면세 반입 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교통세만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 해소
 -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세만을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산세 부과
 - *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경우에도 다른 용도 사용시 반입자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18③)
- 교통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 반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교통세만 징수 * 타용도 사용시 신고규정 없음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의 신고·납부 의무 신설 ○ 신고·납부기한 : 사유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 무신고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신고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3)

가. 개정취지

-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같은 송유관을 이용하여 이종(異種)의 유류 송유시에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
 -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교통세 등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함
 - *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별소비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319원)을 추가 납부
 - 또한, 저유소에서 혼합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도 정유소에서 정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정산함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저유소가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0두4452, '11. 4. 1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를 납세지로 하여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 납세절차 : 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과 교통세·교육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하므로 절차 복잡
 - * 반입시점의 혼유비율은 확정이 가능하나, 여러 시점의 혼유가 저유소에서 섞인 후 반출되는 시점의 혼합비율은 확정할 수 없어 과세표준 산정 곤란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와 첨가제에 대하여 정유소에서 신고·납부를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종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 등)에 대한 신고·납부 ○ 당초 유류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의 사업자가 같은 경우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해 정유소에서 신고·납부함 ○ 과세표준은 혼유 등의 수량, 과세시기는 혼유 등이 발생한 때로 함 ○ 혼유 등의 유형,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저유소에 반입되는 혼유와 첨가제를 혼합하는 분부터 적용

06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가. 개정취지

- 유사석유가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과세방식”으로는 세금부과·징수의 실효성이 미흡
 -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석유제품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처벌(등록취소, 징역 5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과 별도로 과세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해 휘발유·경유와 동일하게 과세 ○ 납세의무자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자 ○ 세율 : - 유사휘발유 529원/ℓ - 유사경유 375원/ℓ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납세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 과세물품 :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 유사경유) ○ 과세표준 : 보관 또는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 세 율 : 현행 휘발유·경유 세율과 동일 -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 세액공제 : 유사석유제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판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재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을 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 문의사항 : ☎ (02) 397-7552~5

1.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328
2.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	329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330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함을 명확하게 규정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01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1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 회수시 추징 ○ 2012. 12. 31. 까지 출자분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 10% → 2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2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명확히 규정
 -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체계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특례 ○ 농업소득 배당 : 비과세 ○ 농업외소득 배당 : 14% 분리과세 -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 (조특령 §65 ① ②에서 규정) * 축산업·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 일몰 : 2012. 12. 31. 까지	☐ 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좌 동) ○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배당 : 14% 분리과세 - 기타 배당 : 일반 과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가. 개정취지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적용 배제 ○ 사업용계좌 미신고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사업자가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한 경우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만 감면을 배제한다는 점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 문의사항 : ☎ (02) 397-7572~5

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334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335
3.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336
4.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337
5.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338
6. 농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	339
7. 환지처분시 예외규정 신설	340
8.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341
9.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342
10.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343
11.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344
1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345
1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46
14.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47
15.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348
16.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0
17.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1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631호) : 2011. 5. 1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01호) : 2011. 7. 25.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53호) : 2011. 6. 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39호) : 2011. 7. 25.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0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벤처기업 등의 범위확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 (20%이상)하여 만든 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3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 5년 →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적용기한 : '12. 12. 31. <추 가>	☐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 ○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05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과세에 대한 추징금액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 유상감자시 : $\frac{\text{유상감자액}}{\text{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times \text{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 미납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06 농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항 · 제67조제1항, 제7항 · 제7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거주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농지(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의 거주지 요건	☐ 거주지 요건의 ‘시’ 및 제외조건에 ‘제주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반영
☐ 개발제한구역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거주지 요건	☐ 거주지 요건의 ‘구’를 자치구로 명확히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7 환지처분시 예외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 제67조제7항제2호)

가. 개정취지

-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도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세 감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 설>	☐ 예외인정 ○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8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광해방지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농지 (원칙) 양도일 현재 농지 (예외) ① 매매계약에 따른 형질변경 등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② 환지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	☐ 광해방지사업* 예외인정 * 광산피해 예방·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③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휴경 →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9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가. 개정취지

- 경작기간 계산시 거주지 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경작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0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6. 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유권해석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이 각각 3년 이상임	○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가. 개정취지

-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在村)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면적한도 : 990㎡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 적용기한 : 3년간('14. 12. 31. 까지) ☐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 : 가축의 개량·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 : 축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8년이상 축산에 종사, 폐업 등을 확인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 $\text{감면세액} = \text{양도소득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축사용지면적}}{\text{총 양도면적}} \quad (\text{다만, } 990\text{㎡를 초과하는 경우 } 990\text{㎡로 한다})$ ○ (감면신청)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7. 2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가. 개정취지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협의 매수, 공익사업목적 수용·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 30% ○ 적용기한 : '11. 12. 31.	○ 기한연장 : '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 : '11. 12. 31.	○ 기한연장 : '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5)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주택) '11. 3. 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대상자) 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대상주택을 취득한 자 ② 대상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자 ○ (임대요건) '11. 3. 29. ~ 12. 31. 까지 임대계약 체결분 ○ (감면적용) -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50%)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위 대상자 중 ①만 해당) : (양도소득세액) × 50%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 : '11. 3. 29. 현재 미분양으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text{소법 §95①상 양도소득 금액} \times \frac{\text{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①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 사업주체 등은 '11. 9. 30. 까지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현황을 '11. 10. 31. 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준공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및 제출 - 사업주체 등은 매매계약 체결후 다음 서류*를 매매계약자(양도세 감면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용을 준공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 준공후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 등을 확인후 날인하며, 동 사항을 준공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 임대기간 확인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양도세 감면신청자는 감면신청시 동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작성한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12. 6. 30. 까지 전자매체(디스켓 등)형태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3. 29.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 고향주택 : 인구 20만명이하 시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 적용기한 : '11. 12. 31. 까지 취득	○ 적용기한 : '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가. 개정취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를 양도시 양도시점에 상관없이 일반세율 적용 ○ 적용기한 : '11. 12. 31.	○ 적용기한 : '12. 12. 31. (1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62~5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358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359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360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362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363
6.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364
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계산	366
8.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367
9.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368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369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370
12.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371
13.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372
1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373
1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374
1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375
1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	376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	377

1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378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379
2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380
2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381
2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382
2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 명확화 ...	383
2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384
2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85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위임사항 규정	386
28.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388
29.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389
30.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 방법 명확화 ...	390
3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391
32.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92
33.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93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394
3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395
36.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범위 개선	396
37.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	397
3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398

39.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399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400
4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401
4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402
4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03
44.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04
45.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405
46.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406
47.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407
48.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408
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	409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설비투자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시 마이스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해 우대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도 포함
- R&D 세액공제 산정시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R&D 세액공제를 증가분으로 계산할 때의 계산방법 합리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이전 후 소득에 대한 감면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4호) : 2012. 2. 28. 공포

0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③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제136의2조)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 : 산업정보 학교)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좌 동)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 2011. 12. 31.	○ 적용기한 : 2012.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다만,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i)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㉑ MIN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㉑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ii)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text{㉑}) \times 50\%$ ○ 적용기한 : 2012. 1월 ~ 2013. 12월(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수 계산방법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액을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 ⇒ 상시근로자 범위 및 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현행과 같음)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시근로자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 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 (좌 동) ☐ 청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계산 ○ 상시근로자수 - 청년 상시근로자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기존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으로 하고,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을 제외하여 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0' 보다 작은 경우는 '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8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9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 고열 작업장 등 특수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 시설 (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 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 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 (당기분 기준) ○ 일몰 : 2013. 12. 31.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특법 §104의18)에 대해서도 일몰 (2013. 12. 31.) 설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가. 개정취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1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항, 별표 6)

가. 개정취지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 기술 R&D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 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공동연구개발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 방식 :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 (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 : 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4년 평균 R&D 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현 행	개 정 안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8,000/4	2,000 = 8,000 / 4
2,000	0	0	2,000	2,000	1,000 = 4,000/4	2,000 = 4,000 / 2
0	0	0	2,000	2,000	2,000 = (4,000 ÷ 2 × 4) / 4	2,000 = 4,000 / 2
0	0	2,000	0	2,000	1,333 = (4,000 ÷ 3 × 4) / 4	2,000 = 4,000 / 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 :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 : 4년으로 환산한 금액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 단, 과세연도의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별표 6 제1호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 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 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 ③ (좌 동) ※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 -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가. 개정취지

-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2011. 12. 31. ○ 공제대상 - 에너지절약형 시설 - 중질유 재처리시설 - 절수설비·기기 -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2013. 12. 31. (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 시설 : 2012. 2. 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 절약형 시설 : 2012. 2. 28.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제3자 물류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3%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좌 동)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좌 동)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 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사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99명인 중소기업(수도권 밖, 제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5명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 (현행) 중기업(104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 적용
- (개정) 소기업(99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 적용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연구전담요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제지원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11. 12. 28.)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신 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개정(2009. 12. 30.)됨에 따라 조문정리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개발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감면 ○ 대상기업 - 첨단기술기업(지경부장관 지정) - 연구소기업(승인제) ○ 지원내용 :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업종 : 생명공학 관련 업종 등 ○ 일몰 : 2012. 12. 31.	- 연구소기업(등록제) * 승인제 → 등록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 제116조의14)

가. 개정취지

- 2009. 8. 18.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산업’이 제외됨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 이전에는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였으나, 타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감면 대상업종 ○ R&D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세액감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	☐ 세액감면 대상업종 (좌 동) -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外·광역시外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 : 2011. 12. 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주사무소 대지·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times \text{감면대상비율} \left(\frac{\text{지역이전에 소요된 금액}^*}{\text{본점 등의 양도가액}} \right)$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 법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액 또는 임차보증금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액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의 이전비용 ○ 일몰기한 : 2011. 12. 31.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 : 2014. 12. 31.
	○ 일몰 연장 : 2014.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3항·제63조제5항·제63조의2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공장을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 유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내의 중소기업 공장을 수도권 과밀 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특법 §63) ○ 수도권과밀내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특법 §63의2)	(현행과 같음)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조특령 §54②) ⇒ (문제점) 법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곧바로 규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 법인의 제외 업종인 소비성 서비스업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5년거치 5년분할 과세) ○ 적용기한 : 2015. 12. 31.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2015.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양도차익 법인세 : 2012. 1. 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감면 : 2012. 1. 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가. 개정취지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 신설

- ◇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건축물·부지)을 2015. 12. 31. 까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조특법 제62조)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2015. 12. 31. 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2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57④~⑥* 준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등 양도가액

종 전	개 정
<신 설>	② (사후관리 요건) 조특령 §57⑦~⑩* 준용 * 다음 요건 위반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익금산입 ⑦ 이전일로부터 2년내 양도, 양도일로부터 3년내 이전 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본사 업무 인원 < 본사업무인원의 50% ⑨ 양도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 취득 (또는 임차)하거나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 ⑩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③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 제출방법) 영 §57⑪ 준용* *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또는 이전 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자산수증익 ☐ 사후추징 요건의 규정 ☐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전 후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 급여와 임원의 범위 및 사후추징금액 납부방법 등 규정 ☐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 ☐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추징금액 납부방법 : 사후추징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특령 §58①~③ : 201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령 §58④~⑦ :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제2호, 제4호)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 외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 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시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급여 지급일로 잘못 적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 예 : 근로 제공기간 5. 1. ~ 5. 31, 급여 지급일 6. 5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지방 이전시 세액감면 ○ 감면내용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① × Min(②, ③) ① 당해연도 과세표준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 / 법인 전체인원 급여총액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제60조제6항 · 제60조의2제16항)

가. 개정취지

-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 업종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설*됨에 따라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일괄 규정하였던 영위업종 기준을 위임조문별로 각각 규정

※ 조특법 §60③, §63⑤, §63의2⑩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시행령 §54②에 일괄 규정	(현행과 같음) ○ 조특법상 위임 조문별로 각각* 규정 * 조특법 §60 → 조특령 §54② 조특법 §63 → 조특령 §60⑥ 조특법 §63의2 → 조특령 §60의2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2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 : 2011. 12. 31.	○ 기한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7,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가. 개정취지

-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감면대상기업을 구체화 하고, 여타 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기준 신설
 - 투자금액, 고용유지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연구개발특구) 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 누계액의 범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 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 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2)

가. 개정취지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 효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6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범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가. 개정취지

- 범칙사건 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점 감안
 -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경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좌 동)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가. 개정취지

-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 공제 범위 ○ 중소기업 : 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 개정취지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 공제 유지 ☐ (좌동) → 별표 2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9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 2005년 이후 전자신고율이 정체된 점, 동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의 신고서 입력비용·오류 축소 등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동 세액공제한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4만원(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 가치세 2만원) 세액공제 ○ 세무사·회계사 : 연간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사·회계사 : 연간 4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 공제제도 ○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 시험용시설 활용지원, 견본품·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대상 범위 확대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지원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4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 투자조합’* 추가 *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4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3조)

가. 개정취지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추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이상)하여 만든 회사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출자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가. 개정취지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 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4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장학사업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상 :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방법 : 수익사업소득의 80% 손금산입 <추 가>	○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5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실효성 제고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th>적용한도율</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 : 2011. 12. 31.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 예 : 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 : 2014. 12. 31.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 연장 : 2012.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최소기준 하향조정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6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관계회사제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 기준, 예 : 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추가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7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 1. 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만큼 익금에서 제외 ○ 적용대상 : 내국법인 ○ 기간 및 대상기업 : 2011. 12. 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기간확대 : 2013. 12. 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하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2013. 1. 1. 이후 → 2014. 1. 1. 이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8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가. 개정취지

-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후에도 사립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 한도 : 수익사업소득금액 × 100%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등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을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남승

◎ 문의사항 : ☎ (02) 397-7552~5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414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415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	416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417
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	418
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	420
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421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을 위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적용방식 정비
-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소득공제금액 계산방식 개정
- 취약계층 등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비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일몰 연장
-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및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인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일몰연장
-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2007. 6. ~ 2009. 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 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0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좌 동) - 공제한도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0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만 15~29세**)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 : 2013. 12. 31. (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2013. 12. 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 선불카드 : 25%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 / 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사용액 / 전체사용액 × 공제율 20% ☐ 적용기한 : 2011. 12. 31. 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 : 2014. 12. 31. 까지(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0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 아파트 관리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등) ☐ 도로통행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제88조의2 · 제89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 12. 31. 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 12. 31. 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 12. 31. 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 12. 31. 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종 전	개 정
○ (내용) 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 12. 31. 까지 가입	○ (좌 동) ○ (기한) 2014. 12. 31. 까지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0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
 -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자원개발펀드가 아직 초창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서울 :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1. 12. 31. 지급분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 2014. 12. 31. 지급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법률 제9921호, 2010. 1. 1. 부칙 제7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 (2007. 6. ~ 2009. 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2007. 6. ~ 2009. 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 1. 1. ~ 2011. 12. 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 1. 1. ~ 2012. 12. 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 성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426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	427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428
4.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추가	430
5.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범위 축소	432
6.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	434
7.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판정기준 보완	435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함으로써 원화표시채권과 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으로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 효과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
- 외화도입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아닌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자시 새로 투자된 사업용자산의 비중만큼만 감면부여하는 것으로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개정하여 설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종점 감면사업의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세감면을 추가로 받는 사례 방지
-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을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정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01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전환
- 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 발행주체 : 국가·내국법인 등 ○ 발행물 : 외화표시채권 * 국내발행 + 국외발행분 면세 ○ 적용배제 :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면세범위 축소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은 과세전환 ○ 적용배제 대상 추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 면세 ○ 발행주체 : 은행·산은·수은·기은·농협·수협·정책금융공사·종금사 ○ 발행물 : 외화표시어음, 외화예금증서* 국외발행물만 면세 ○ 적용배제 :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적용배제 대상 추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발행·차입·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에 필수적이므로 존치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연구원·전문기술인 등)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감면혜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일몰) 2011. 12. 31.	○ (일몰연장) 2014.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 경제자유구역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상 '03년 지정)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정(이상 '08년 지정)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특성**상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 등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조성이라는 목표와 세부목표로서 정보시스템·전략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표방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는 여타 산업단지와 달리 산업·상업·주거단지가 융합된 복합개발 방식을 취함

- 현행 제조업 중심의 감면으로는 서비스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으로 채택된 사항

- 추가대상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및 금액기준은 현행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감면 범위 등 준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포함관계 비교 [8차 개정('00. 3.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사업서비스업 (대분류 M)이 있었으나 9차 개정('08. 2. 1. 시행)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등으로 나뉨]

< 사업서비스업 >

- 광범위한 아웃소싱 활동 중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가 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체계상 중간투입물로 활용(예.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리서치 등)

(출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 (대상) 특정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외투기업 ① 입주기업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업 종</th><th colspan="2">투자금액(천만불)</th></tr><tr><th>5년형*</th><th>7년형**</th></tr></thead><tbody><tr><td>- 제조업</td><td>1</td><td>3</td></tr><tr><td>- 관광업</td><td>1</td><td>2</td></tr><tr><td>- 물류업</td><td>0.5</td><td>1</td></tr><tr><td>- R&D</td><td>0.1</td><td>0.2</td></tr><tr><td>- 의료기관</td><td>0.5</td><td>-</td></tr></tbody></table> * (5년형) 3년간 100%, 2년간 50% ** (7년형) 5년간 100%, 2년간 50% ② 개발사업자 (7년형 감면) *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투비율 50% + 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 감면혜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배당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 관세* *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	업 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 입주기업 감면대상에 ‘사업서비스업 등’ 추가 ※ 투자금액기준 : 1천만불 이상(5년형 감면만 허용) * 사업서비스업 등 범위(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서비스업
업 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04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2항)

가. 개정취지

- 외화도입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주식배당의 재투자자에 대한 감면제한
 - 배당받은 주식은 그 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부종성을 감안하여 그 근거가 되는 주식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감면제한)

* 배당받은 주식은 외투기업의 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감면을 제한(조특법 §121의4②)하고 있는 준비금·법정적립금 자본 전입의 경우와 유사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 이익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

<배당받은 주식의 재투자에 대한 감면제한 여부에 따른 효과비교>

감면제한 ×	사업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외국인투자	100				100					
당초투자											
재투자											

감면제한 ○	사업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외국인투자	100				100					
당초투자											
재투자											

※ 만일, 동일 외국투자자가 감면기간 종료시점마다 배당받은 주식으로 다른 외투기업에 재투자하고 감면결정 받을 경우 외화도입 없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대상)외국법상 외국인투자(§2①[4]) - (투자유형) 내국법인 등에 투자하는 방법 ·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의 주식 등 취득 · 5년 이상의 차관 - (투자목적물)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한 출자수단 · 대외지급수단 및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권리 · 국내 부동산 ·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감면제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외국법 §7①[1]) : 그 근거가 되는 소유 주식 등 감면의 예에 따라 그 남은 기간만 감면 ※ '83. 12. 31. 도입(외자도입법 §16②)	□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제한 추가 ○ (감면제한 범위 확대)외국투자자가 이익 처분에 의해 배당으로 받는 주식 추가 (외국법 §7①[4]) ※ (예) 5년형 감면사업의 3차년도에 주식배당 받아 재투자*하는 경우 ⇒ 남은 기간(3년)간 감면부여 (1년 100% + 2년 50%) * (재투자) 다른 외투기업의 제2의 감면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범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가. 개정취지

- 최소 투자금액기준이 없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과도한 감면 배제
 - 설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종전 감면사업의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세감면을 추가로 받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의 조세감면 ○ 감면혜택 - 감면기간 : 증자분에 대해 새로운 기간 (5년·7년) 부여 - 감면세액 : ① × ② × ③ ① 법인세(산출세액) ② $\frac{\text{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text{총 과세표준}}$ ③ 감면비율 · 일반적인 경우 $\frac{\text{평균적인 감면비율}^*}{\text{총자본금}}$ * 증자전 외투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투자본금 × 감면율	-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정 일정한 사유^{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사업의 전체 사업용자산 중 증자시 새로 투자된 사업용자산의 비중만큼만 감면 부여 $\text{①} \times \text{②} \times \text{③} \times \text{④}^*$ * $\frac{\text{증자사업 개시일 이후 설치한 사업용자산가액}}{\text{증자사업의 총 사업용자산가액}}$

종 전	개 정
증자 - 기타사업간 구분경리 증자분 외투자본금 × 감면율 증자분 총자본금 ※ (문제점)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시 종료된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 발생* * 종전 사업용 자산기여분만큼 감면소득이 더 커져 감면세액 증가	주) 일정한 사유(①+②) ① (대상감면의 종류)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종전사업의 자산을 재활용한 경우로서 증자분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활된 종전사업자산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

가. 개정취지

-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으로 감면한도 계산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에 따라 발행(할증 또는 할인)하거나 외국투자자가 납입한 주식의 소각에 따라 감자차익·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한도를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 법인세액 × 총 과세표준 대비 감면 소득률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50%, 100%)	
☐ 감면한도 ① + ② ① 금액기준 : 외국인투자금액 × 50%* * 7년형 감면(대규모투자·고도기술 수반 사업에 대한 감면) : 70% ② 고용기준 : 상시고용인원 × 1천만원 (외국인투자금액 × 20%한도) ⇒ 감면한도계산시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의 범위 : 자본금	○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 조정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익 - 감자차손)* *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판정기준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가. 개정취지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판정기준 보완 필요
 - 감면대상사업의 고도기술 등의 진부화 판단을 위한 기준 중 ‘고도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일’은 동 감면제도의 폐지*로 사문화(死文化)
 - * 과세권의 외국이양, 기술간 불형평을 이유로 2010. 1. 1. 폐지됨
 - 고도기술 등의 국내도입 후 고도기술 등의 습득이 가능한 때인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한 날”을 새로운 판단 기준일로 설정
 - *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
(이유 : 내국인이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한 상태)
- ※ 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추가
 - (첨부서류) 해당 고도기술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 계약서
 - (기재사항) 외국인투자신고일 및 사용료의 최초 지급일*
 - * 감면사유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인 경우에 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요건 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② 진부화 되지 않았을 것 - 국내 도입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기산일 [i) · ii) 중 빠른 날] - i)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일 - ii)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	ii) 기술도입에 대한 사용료를 최초로 지급한 날(= 기술도입계약상 지급일)

종 전	개 정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후 7일 이내 신고(외측령 §31①[1]) * 동 제도가 폐지('10. 1. 1.)됨에 따라 사문화 -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도입 기술 보다 진보된 것일 것 ③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 에서 이루어 질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령) 2012. 2. 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서식)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440
2.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441
3. 군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제외	442
4.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43
5.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445
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사후관리 보완 등	447
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적용기한 연장	449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적용기한 연장	450
9.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451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에 대한 면세규정 신설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영세울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추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울, 면세, 사후환급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
- 영세울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후관리 보완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울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596호) : 2012. 2. 2. 공포

01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추가하여 구입부담 경감
- 국가의 위탁을 받아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보급하는 단체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자막수신기 보급사업을 위탁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계산으로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0, 2011. 6. 3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 의수족, 휠체어 등 23종 <추 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자체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한국농아인협회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군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군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목적이 작전, 훈련 등 군 고유 목적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기타 부문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인 골프연습장도 과세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유류 면세(조특법 §106의2) ☐ 적용기한 : '12. 6. 30. 까지 100% 감면, '12. 7. 1.~12. 31까지 75% 감면	☐ 100% 감면으로 통일하고 적용기한은 '15. 12. 31. 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기자재 사후 환급 : 2012. 1. 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별표 5, 별표 6)

가. 개정취지

- 종전 규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실제 활용이 빈번한 농·어업용 기자재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농·어민의 농어업용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 규정 별표 1) : 32종 ☐ 동력이앙기	☐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버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별표 5)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 <추 가>	☐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 ☐ 화훼재배용 배지 ☐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

종 전	개 정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별표 6) ☐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등 23종 <추 가>	☐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철재 재질) ☐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구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사후관리 보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
 - 미지급통보일 현재 경감세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지급통보일 까지도 경감세액을 미지급한 경우를 구별하여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지급한 경우는 제재를 완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 ○ 적용기한 : '11. 12. 31. ○ 경감세액 추징 사유·절차·추징액 - 사유 : 경감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운수 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 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추징	○ 적용기한 : '13. 12. 31.(2년 연장) - 추징액 산정방법 변경 : 경감세액 지급 기한 경과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미지급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추징

종 전	개 정
- 추징액 : 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경감세액의 20%) *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감세액 추징	• 지급시 : 이자상당액과 가산세(20%)만을 추징하고 지급한 경감세액은 제외 • 미지급시 : 미지급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가산하여 추징 * 미지급시 가산세율 상향(20%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

0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가. 개정취지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 ○ 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초과 ○ 적용기한 : '11. 12. 31. ※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은 계속 면세	○ 적용기한 : '14. 12. 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면세 ○ 적용기한 : '11. 12. 31.	○ 적용기한 : '14. 12. 31.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계속 적용

09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2)

가. 개정취지

-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중소기업)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당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줌으로써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의 수출재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 공제 대상 : 중소기업이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와 원산지 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 ○ 발급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 영 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56
-----------------------------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01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가. 개정취지

- 향후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100만원) 등을 감안하여 감면한도를 200만원으로 결정
 - 경형 전기자동차의 생산가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기승용차가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개소법 §1②3호)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 : 100%(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 2014.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반출·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을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남승

◎ 문의사항 : ☎ (02) 397-7552~5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460
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61
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	462
4.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	463
5.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차등화	465
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거 신설	466
7.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	467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를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을 추가
-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 중 주택요건을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자에서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1주택자로 상향 조정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및 근로단가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 환산규정 도입(단, 일용·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환산규정 적용 배제)
- 현행 단일 구조인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 개정
- 근로장려금의 복지행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사전에 신청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전세계약서를 미제출하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대차 거래의 경우 전세금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도입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 : 2011. 12. 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 : 2012. 2. 2. 공포

0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대상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 ○ (좌 동)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적용

0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법률 제9921호, 2010. 1. 1. 부칙 제4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기 ☐ 2014. 1. 1. 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 분부터	☐ 일부사업소득자*에 대해 2012. 1. 1. 부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소령 §137 ①)의 범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0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가. 개정취지

- 주택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수급대상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① 또는 ②) ① 무주택자 ②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자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② 일정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기간제·단시간 등 취약층 근로자 적용 제외 총소득기준 = 일반기준 × [근무월수/12] × 130% * 근무일이 1월 미만인 월은 1개월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반) 2011. 12. 31.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득기준 환산) 2012. 1. 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6항)

○ 근로장려금의 복지행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사전에 신청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 ① (원칙) 수급자가 근로소득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② (기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신 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거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안내)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경우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이미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한 확인적 규정

07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

가. 개정취지

- 전세계약서를 미제출하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대차 거래의 경우 전세금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금의 평가방법 ☐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의 금액 <신 설>	☐ 전세금의 평가방법 ☐ (좌 동) ☐ 보충적 평가방법 ① 적용사유 - 신청자가 전세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인*간 임대차계약(무상 임대차 포함)의 경우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준용 ② 평가방법 - 재산평가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 개별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 *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가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 문의사항 : ☎ (02) 397-7562~5

1.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472
2.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	473
3.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474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475
5.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77

농어촌특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7호) : 2011. 12. 31. 공포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3호) : 2012. 2. 2. 공포

01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대상 ☐ 농어민 <신 설>	☐ 비과세 대상 ☐ (좌 동) ☐ 임업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02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적용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특세 신고납부 ☐ 개별법인이 신고납부	☐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농어업 관련 기본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경우 농업의 범위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 2헥타르 미만 농지, 20톤 미만 어선 보유 <신 설>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좌 동)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0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①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중 농특세를 비과세 하는 일부 항목*(총11개 중 4개)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 * 지식산업센터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 감면, 지방공사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감면
 - 동 비과세항목의 근거법령이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특세 비과세 규정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규정
- ②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현재 감면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필요
-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정리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상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유치원에 대한 감면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통합*됨
 - * 지특법 제42조제5항 → 지특법 제19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세 감면규정 변경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 <신 설>	☐ 지식산업센터·한센정착농원·지방공사·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종 전	개 정
* 행안부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은 농특세 비과세 <신 설> ○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 근거규정 : 「지특법」 §42⑤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상기 4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 (좌 동) - 근거규정 : 「지특법」 §1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012. 2. 2.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05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부과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012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2년	3월	일
발 행	2012년	3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 397-7533)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